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9. 8. 31.
- 회부일 : 2009. 9. 2.
- 상정일 : 2009. 9. 9.(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제 천 시 장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가. 제안이유

-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함으로 인해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상수도분야 민원해소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한 「표준급수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및 문구 등을 수정하고자 현행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 제천(왕암)바이오밸리 및 농공단지 (테크노밸 포함)에 공급하는 업종 중 전용공업용을 폐지하고 산업용을 신설하여 기업유치 용이 및 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 (안 제7조)
-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안 제8조)
- 급수 공사의 시행 및 대행업자, 공사비 부담 등 (안 제9조 내지 제14조)
- 시설 분담금 및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등 (안 제15조 내지 제16조)
- 수도의 사용, 신고, 급수 중지와 폐전 등 (안 제19조 내지 제24조)
- 수도 요금 등 (안 제25조 내지 제37조)

- 급수설비 관리 등 (안 제38조 내지 제37조)
-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및 이의신청 등 (안 제44조 내지 제48조)

3. 전문위원 겸 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광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급수조례의 균형을 맞추고 현실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으로 전국표준급수 조례안이 2008년 8월에 시달되어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 행정절차법에 의거 2009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21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09년 8월 27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 또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2009년 7월 22일 개최하였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2009년 7월 29일 개최하여 원안 가결하는 등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 본 조례안은 5장 4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급수공사의 비용, 제3장은 급수에 관한 사항, 제4장은 요금과 수수료, 제5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 1항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에도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제5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 공사의 경우 공사비를 지원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38조 제2항에서는 급수설비의 노후화 및 수질기준 위반시 급수관의 세척·생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9조 제3항에서는 급수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40조에서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한, 누수를 발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였고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제3항의 규정은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자들에게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시 책임을 회피하는 규정으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안 제24조(급수 중지 및 개전·폐전) 제2항에서 3개월로 되어있는 급수의 중지 기간을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수도사용자들의 고충을 경감 하는 차원에서 급수 중지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주시의 경우 1년 이내로 정함)
- 안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제3항에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시장의 부담하는 신설 규정은 현재까지 수도계량기의 이상유무와 관계없이 시험비용 부담까지 져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37조(요금 등의 감면)에서 표준 급수 조례안 제35조 제2항에 명시한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한 사항”의 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 대한 감면 혜택 규정을 삽입하여 수도사용자들과 생계급여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40조(포상금의 지급)에서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거나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한 규정은 상수도의 얘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한 수돗물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정으로 사료되나, 포상금 지급 대상에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여부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은 환경부, 행정안전부 표준 급수 조례안에 의한 전면 개정 사항으로 급수수요의 충족, 사용자의 사용요금의 부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시외지역 외곽 몇 개 농가의 수도설치 요구에 관한 대책은?(김병룡 위원)
- 안 제24조의 급수중지 및 개전·폐전 규정중 제2항 급수중지 3개월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불편 사항은?(최종섭 위원)
- 안 제37조 요금감면 규정을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공익을 위한 사업,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는 것은? 특히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꼭 요금을 감면해 주어야 함.(유영화 위원)

나. 답변요지 <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

- 배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이어야 가능하며 가급적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음.
- 본 조항은 수용자가 원해서 휴전하는 경우를 말함. 매달 겸침시 확인과정을 거치며 필요시 개전하여 주고 있어 주민불편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금번 조례안 전부개정으로 4-5억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되고 특별회계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므로 감면범위 확대는 시기를 미루면 좋겠음.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소수의견

“ 없 음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내 용

- 산업건설위원장 수정안 발의
- 이의유무에 의한 수정안 가결(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
 - 안 제37조제1항제7호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 조문대비표 1부. 끝.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1378
------	------

제안연월일 : 2009. 9. 9.

제안자 : 김명섭 위원회 3인

1. 수정이유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도요금 및 수료를 감면해 주고자 함.

2. 주요골자

안 제37조제1항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7조제1항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생략)</p> <p>1.-6. (생략) <u>(신설)</u></p> <p>7. (생략)</p> <p>② (생략)</p>	<p>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원안과 같음)</p> <p>1.-6. (원안과 같음)</p> <p>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u>복지시설</u></p> <p>8. (원안과 같음)</p> <p>② (원안과 같음)</p>